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출자 : 삼척시장
제출년월일 : 1995. 4.

1. 제안이유

삼척시립박물관의 성격, 건립규모, 전시계획, 기타 자료수집 및 감정평가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건립구상에 반영함으로써 건축, 전시 및 운영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박물관으로 건립 추진키 위함.

2. 주요골자

- 박물관건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둠(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박물관 및 건축학 관련 교수,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박물관 개관일 까지로 함(안 제5조)
-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는 삼척시립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폐지됨(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료수집 및 전시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물설계내용 및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속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자료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향토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박물관학, 민속학, 역사학, 건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박물관 개관일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보궐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비보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삼척시립박물관 개관일 까지 적용하다.